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지정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자격취소 및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학위전공심화과정은 학력과 경력의 선후 관계없이 학력과 경력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입학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등 기능대학의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신속한 훈련 지원을 통한 현장의 필요인력 양성 및 기업의 훈련참여 제고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일자리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권한 지방이양(안 제2조제3호나목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규정함.

나. 지역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제1항)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역 일자리사업을 수행 중이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심의사항에 지역 일자리사업을 포함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24조제4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범위·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등 권한 지방이양(안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 해산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규정함.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취소 등 권한 지방이양(안 제33조제2항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규정함.

바. 지방이양(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따른 업무 협조 사항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시·도지사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이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 결과 및 내용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근거를 신설함.

사.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 지방이양(안 제39조제3항)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규정함.

아. 기능대학 설립 후 중요사항 변경 인가(안 제39조제5항 신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위치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기능대학 분교 설치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제39조에 따른 설립 절차를 거쳐 국내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차.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안 제40조의2제4항 개정 및 법 제40조의2제5항·제6항 신설)

학위전공심화과정은 학력과 경력의 선후 관계없이 학력과 경력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되, 일부 학위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함.

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범위 확대(안 제56조제5항)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

타. 지방이양(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도・감독 등 권한 부여(안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내용 등 필요한 사항 및 이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함.

파. 지방이양 업무 수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관련 청문 절차 보완(안 제6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에 대한 처분의 경우 청문 실시 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도록 규정함.

하. 인용조문 정비(안 제11조의2제1호 및 제29조제6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1. ~ 8. 3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법률 제 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22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인적자원개발”을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사업”으로 한다.

7.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 지원

제3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2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관할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를 “관할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6호 중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를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관할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관할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관할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관할 시·도지사의”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관할 시·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관할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로 한다.

제34조의2 전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관할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관할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업무의 협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시정명령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 명령에 관한 업무
3.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설립허가취소,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에 관한 업무
4.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에 관한 업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업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처분 결과 및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39조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기능대학 분교의 설치)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 절차를 거쳐 국내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의2제4항 중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제5항 중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공공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5.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3.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조의2, 제39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40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1조의2제1호, 제22조의2제1항제7호·제8호, 제29조제6호, 제39조의2 및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나. ----------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신 설>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 지원 8. ----------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사업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2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관할 시·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②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관할 시·도지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내용(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관할 시·도지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결격사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	6.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 ---------- ---------- ----------

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에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시·도지사는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 관할 시·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	② ---------- 관할 시·도지사의 ----------

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관할 시·도지사에게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관할 시·도지사는 ---------- ---------- ---------- ---------- ----------.
⑥ 삭 제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 ---------- ---------- ---------- ---------- --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할 시·도

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지사는 ----------.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업무의 협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

	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시정명령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 명령에 관한 업무 3.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설립허가 취소,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에 관한 업무 4.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에 관한 업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업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처분 결과 및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② (생 략)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 시·도지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기능대학 분교의 설치)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 절차를 거쳐 국내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 ③ (생 략)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신 설>	1.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 ④ (생 략)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	⑤ ----------

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 공공단체
<신 설>	5.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청문)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삭 제>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삭 제>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삭 제>

6.·7. (생 략)	3.·4.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신 설>	②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3.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0